

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	2066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'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.
- 나. 특히,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어,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59조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
- 「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23조

나. 필요성

-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

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 육성 필요

-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·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필요
- 성장 가능성 있는 기후테크 벤처·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(투자→성장→자금회수→재투자) 조성 필요

※ 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추진 실적

(단위 : 억 원)

구분	조성년도 (운용사)	존속기간 (투자/회수)	결성 금액	서울시 출자액	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(총 투자집행액)	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(총 투자기업 수)
			805	90	128 (569.7)	15 (69)
1호	2011년 (서울투자파트너스)	7년 (4년/3년)	160	20 (SBA 출연금)	40 (138.7)	5 (16)
2호	2012년 (다이스씨안베스트먼트)	8년 (4년/4년)	100	20 (SBA 출연금)	20.5 (96.4)	4 (19)
3호	2013년 (메디치안베스트먼트)	11년 (3년/8년)	200	20 (市중소기업육성기금)	45 (207.1)	3 (20)
4호	2017년 (코퍼스안베스트먼트)	8년 (4년/4년)	145	10 (SBA 기금)	22.5 (127.5)	3 (14)
5호	2023년 (클리지오나인베스트먼트)	8년 (3년/5년)	200	20 (市중소기업육성기금, 3호 펀드 회수금)	- 설립 출자금 납입('23.12.1) - 기업발굴 및 투자 진행 중	
6호	-	8년 내외	200 이상	20 (市기후대응기금)	- 투자운용사 선정중('24.8월 중)	

3. 기후테크 펀드 출자 계획

가. 추진방향

-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
 - 정부출자기관(모태펀드 등)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
-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미래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 집중 육성
- 市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초기 벤처·창업기업 생존

및 성장 지원

-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,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
 -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
 -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

나. 출자금액 : 20억원

- 출자재원 : 기후대응기금

다. 기후테크 펀드 조성 계획

- 펀드명 : 기후테크 펀드

- 조성목표 : 200억원

- 서울시(20억원), 모태펀드(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), 민간출자자 등

- 조성형태 :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투자대상 :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등

-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(창업기업·벤처기업) : 서울시 출자금의 200% 이상

- 초기 창업기업(창업 3년 이내)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: 서울시 출자금의 100% 이상

※ 투자대상은 펀드운영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①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·허가·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,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

제59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·법인세·취득세·재산세·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

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·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,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

- 제23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,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지방 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·취득세·재산세·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 - ③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금 예산 반영

※ 작성자 :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박지미 (☎ 2133-3619)